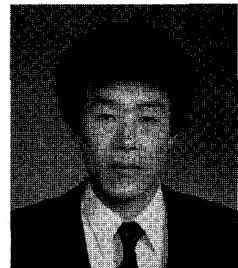


Ⅱ. 중국산 미가공 목제 파렛트 및 포장용기에 대한 미국 농무부의 긴급 규제



KPA 연구원
박 종 은

가. 발단

1998년 9월 미국 농무부(USDA)는 중국산 미국 수출 목제 포장재에 대해 1998년 12월 17일 미국 도착분부터 가공처리를 요구하는 잠정규정을 채택하였다. 이러한 긴박한 규정들은 중국에서 미국으로 유입되는 미가공 목제 포장용기들에 의해 뉴욕이나 시카고의 경우처럼 삼림을 황폐화시키는 아시아산 긴뿔 딱정벌레(ALB)의 심각한 발생으로 인해 유발된 것이었다.

파렛트 뉴스는 국제 무역에 있어서 수출입 화물용 파렛트와 환경문제가 연계된 민감한 사건이므로, 이번 사건의 내용을 입수하여 소개한다.

나. 사건의 경과

1. 미국 과학자 모임과 환경단체들의 제안

앞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미국 농무부는 중국의 대미 수출품에 쓰이는 목제 포장재료에 동승해 삼림에 피해를 끼치고 있는 딱정벌레 등의 해충에 대한 대책으로 잠정 규정을 채택하였다. 이에 대해 미국 과학자들의 모임과 환경 단체들은 1998년 10월 15일 미 농무부 장관 댄 글리크만(Dan Glickman)에게 보낸 서한에서 미가공 목제 파렛트, 나무상자와 수입제품의 선적에 이용되는 그 이외의 용기들에 대한 유입을 금지시키자는 안건을 제출했다.

다음은 그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1) 현재 사용되는 가장 일반적인 가공처리법은 메틸브롬물 훈증소독법(fumigation with methyl bromide)이나, 적절한 대책은 못됨

몬트리올 의정서(The Montreal Protocol)나 공기정화결의서(The Clean Air Act)등에 의하면 메틸브롬물은 클로로 플루오르 카본(CFCs)보다도 50배나 더 강력한 1급 오존 파괴 물질로 미국환경보호국(EPA)에서는 동 물질을 가장 치명적인 범주인 범주 1(예민한독소)로 규정하고 있음.

- "Category 1 Acute Toxin"

(2) 미 농무부 항만 검역관들은 1985년 이후로 354건의 딱정벌레발견

1997년 이후로도 중국제품 보관창고에서 35건 이상의 딱정벌레 침입발견 1985년 이후 미 농무부는 89개국으로부터 유입된 목제 포장재료내에서 곤충발견. (그중 72%는 유럽, 16%는 아시아, 5%는

남아메리카, 2%이하는 중앙아메리카,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그리고 카리브로부터 유입된 목재 포장재료 내에서 발견)

(3) 과학자 모임과 환경단체들의 궁극적인 제안 목적

현재 다양한 재료로 만들어진 선택적인 포장형태들이 시장으로 유입되고 있으며 이들 재료들로 전환하는 것은 환경적인 위협에 대한 세가지의 기술적인 해결책이 됨.

- ① 공격받기 쉬운 생태계를 손상시키는 해로운 이질 유기체의 확산이 억제됨.
- ② 오존층을 파괴시키는 독소 화학물질의 사용이 최소화 됨.
- ③ 재건하기 힘든 삼림을 위해 목재 제품에 대한 수요를 줄임.

이러한 모든 이유로 환경단체들은 미가공 목재 포장재료들의 유입과 훈증소독법으로 이용되는 메틸브롬물의 사용에 대해 단계적으로 제거해 나갈 것을 촉구하였다.

2. 환경단체들의 제안에 대한 반론

- 버지니아 기술센타(더 나은 유니트로드의 구상을 위한)의 이사인 존 클라크(John Clarke)의 반론 제기

- ① 아시아산 긴뿔 딱정벌레(ALB)의 침입에 대비한 중국산 목재포장재료와 파렛트에 대해 조치를 요구하는 제안들은 결국 미국내 파렛트 재사용산업에 역효과를 가져옴.
 - ② 가공처리용 화학물질의 목재 제품내 잔류로 인한 현실적인 건강문제의 야기.
 - ③ 미가공 목재 파렛트의 위협보다 더 많은 파렛트의 유용가치에 대한 인식의 전환 필요.
 - ④ 존 클라크는 본 논쟁에 관하여 파렛트나 컨테이너 산업의 회원들에게 조언을 하고 있음.
- 조언을 받은 한 파렛트제조회사는 중국행 제품을 선적하기 위해 목재용기를 만들어 포장·수송후에 중국에 도착한 후 다시 중국산 대미 수출품의 포장·수송에 이용함.

위와 같은 반박 자료와 함께 존 클라크는 과학자모임과 환경단체들에게 파렛트에 관한 공동조사를 실시하자고 제안하였다.

나. 사건의 결과

미국 농무부는 3회의 공청회(98년 10월 16일 : 1차, 98년 11월 3일 : 2차, 98년 11월 5일 : 3차)를 거쳐서 중국산 목재포장물에 대한 상향된 가공처리 요건을 확정, 1998년 12월 17일 미국 도착분부터 적용시켰다. 발효된 가공처리법은 다음과 같다(선택사항)

(※주의 : 2005년 1월 1일부터 메틸브롬물의 사용을 미국정부는 금지시키기로 결정)

- (1) 메틸브롬물 훈증소독법(Methyl bromide fumigation)
- (2) 수소화인 훈증소독법(Phosphine fumigation)
- (3) 방부제 처리법(Preservatives – such as copper 8 – quinolinate)
- (4) 목재 건조가마사용법(Use of kiln dried wood – 함수율 20% 미만)

다음은 미 농무부의 잠정규정에 관하여 NWPCA(미국목제파렛트·컨테이너협회)와 회원들과의 질의·응답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이해를 돋기 위하여 밸ച류·수록)

질문 : 포장재료로 목재를 사용하는 것이 1998년 12월 17일부터 금지 된다고 들었습니다.

답변 : 클린턴 행정부가 제안한 잠정규정은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목제 포장재료에 대한 가공처리 및 문서에 의한 입증을 요한다. 새로운 규정은 포장용기의 사용을 금하는 것은 아니나, 어떤 새로운 요건을 요한다.

질문 : 왜 이들 요건이 필요한가?

답변 : 새 요건들은 중국에서 수입된 목제 포장상자에서 직접적으로 유래한, 일리노이와 뉴욕의 나무들에 붙어 있는 아시아산 긴뿔 딱정벌레 (ALB)의 침입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미 농무부 공무원들은 이것을 제2차 “매미나방” 침입이라고 부르고 있다.

질문 : 중국을 출발하기 전의 선적물에 대한 요구사항은 무엇인가?

답변 : 최종 승인된 가공처리 방법들중의 한가지로 처리될 것과 요구된 문서를 지닐 것이 필요로 된다.

질문 : 모든 목재 재료들이 가공처리 되어야 하나?

답변 : 아니다. 동양산 합판등의 제재목들은 제조공정에서 ALB를 박멸시킬 것이다. 그러나, 이 포장재료를 사용한 선적물에는 문서가 따라야 한다.

질문 : 문서 요건이란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답변 : 최초의 항구에 도착할 때에, 목제 포장재료는 중국을 출발하기 전에 가공 처리가 되었음을 밝혀 주는 한가지 증빙서를 지녀야 한다 (중국 정부 관리가 서명한). 만일, 선적물에 어여한 목제 포장재료도 들어있지 않다면, 그때에 수출업자는 선적물에 수반되는 한 가지 명세서로 그러한 사실을 밝혀야 한다.

